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[이인식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88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이인식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, 엄삿별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아이돌보미 처우개선(안 제7조)

마. 지정·위탁 및 지도·점검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 및 제4조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4. 2. 5. ~ 2024. 2. 13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2. 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아이돌보미”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서비스 제공기관”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이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, 돌보는 아이의

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)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
2.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
3.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비용지원
2.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
3.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)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지도·점검)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「아이돌봄 지원법」

[시행 2023. 10. 12.] [법률 제19338호, 2023. 4. 11., 일부개정]

**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**제4조(국가 등의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